

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신고인	① 상호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성명(대표자)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(사무실) (전화번호:)		
⑥ 매립시설 소재지	(전화번호:)		
⑦ 업종	⑧ 승인·허가번호	제	호
⑨ 사용개시 예정일	⑩ 사용종료 예정일		

사용개시대상 매립시설

⑪ 시설 종류	⑫ 승인·허가내용		⑬ 사용개시신고내용		⑭ 매립예정량(톤/일)	⑮ 최종복토 예정면적 (㎡)
	면적(㎡)	용량(㎡)	면적(㎡)	용량(㎡)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해당 매립시설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)의 검사결과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①란은 매립시설 설치 승인·신고 및 허가 업소명을 적되, 수인이 공동으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.
2. ⑥란은 매립시설의 소재지를 적되, 매립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류별로 각각 적습니다.
3. ⑦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, 그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.
4. ⑩란은 ⑬란의 사용개시신고 면적 및 용량의 사용종료 예정일로서 1일 평균 매립계획량 및 복토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내용을 적습니다.
5. ⑪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종류별로 적습니다.
6. ⑫란은 승인·허가받은 총 매립면적(실제 매립가능면적) 및 매립용량을 적습니다.
7. ⑬란은 매립시설을 분할하여 구획별로 조성·사용하려는 경우에 매립시설이 조성되어 사용을 시작하려는 면적 및 용량을 적고, 승인·허가받은 면적 전체를 조성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⑫란과 동일하게 적습니다.
8. ⑭란은 일일 매립예상량을 적습니다.
9. ⑮란은 매립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최종복토 예정면적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